[별지 제89호의2서식] <개정 2012.8.10>

자동차점검·정비명세서

차량 소유자	등록번호		차명(차종)	()	주행거리 km
	소 유 자		주소	(전화번호:)	
	등록연월일		점검·정비의뢰일자		
정 비 사업자	사업자등록번호		정비업등록번호		
	업체명(대표자)	()	주소	(전화번호:)	
	점검·정비완료일자		출고일자		정비책임자 (인)
점검·정비내역			추가정비동의여부	□동의 □부동의	

작 업 내 용	부 품				공 임
	구 분	수 량	단 가	계	

소 계		V A T		합 계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서명 대표이사 (인)

1. 장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4조제1항제2호).
 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90일 이내
 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60일 이내
 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: 점검·정비일부터 30일 이내
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3.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): A
 나. 재제조품: B
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: C
 라. 수입부품: F

※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

(일반용지 60g/㎡)